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4. 14.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4월 8일

나. 제 출 자 : 고기판 의원 외 3인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 4.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기판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공유(共有)”가 주목받고 있음. 소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경제가 자원고갈, 이윤창출, 경쟁, 과잉소비를 유발시켰다면,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공유경제는 공유를 기반으로 자원절약, 가치창출, 신뢰, 협력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음. 이 조례는 내가 가진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타인과 함께 나눔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공자원의 공유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유영역 발굴, 지원, 인식확산 등 공유정책을 적극 추진(안 제5조)

○ 공유촉진을 위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안 제8조)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안 제9조, 제10조,제12조)

○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안 제11조)

○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 및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촉진 정책 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유사업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하여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중에서 공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공유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이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단체 등이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경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과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 촉진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제정 조례안의 목적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향후 '공유' 와 '공유기업 및 단체' 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보다 특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보완 대책이 요구됨.

○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2012.12.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37개 기업 및 단체를 공유기업으로 지정·운영중에 있음,

- 지정조건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기업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고기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

발의년월일 : 2014년 4월 일

발 의 자 : 고기판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사회적 ·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공유(共有)”가 주목받고 있음. 소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경제가 자원고갈, 이윤창출, 경쟁, 과잉소비를 유발시켰다면,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공유경제는 공유를 기반으로 자원절약, 가치창출, 신뢰, 협력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음.

이 조례는 내가 가진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타인과 함께 나눔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자원의 공유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공유영역 발굴, 지원, 인식확산 등 공유정책을 적극 추진(안 제5조)

다. 공유촉진을 위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안 제8조)

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마.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안 제11조)

바.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 및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자치법규안 :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서울특별시와의 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

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또는 타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신고,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경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촉진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